

오순절신학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2022년 3월 1일

제1조(목적) 본 연구소의 명칭은 오순절신학연구소라 칭하고,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 94조의 4에 규정된 오순절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오순절신학에 관한 연구
- ② 오순절신학 역사에 관한 연구
- ③ 오순절신학 총서 발행
- ④ 오순절 학술 심포지엄
- ⑤ The Spirit & Church 발행
- ⑥ 오순절신학 해외 서적 번역 및 발행 및 보급
- ⑦ 한국 및 해외 오순절 관련 중요 사료 소장
- ⑧ 오순절신학에 관한 교육 일반
- ⑨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제3조(조직)

-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두며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연구소 사업에 관한 문서관리 및 기록을 보관하며, 회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은 부소장, 연구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7조(재정) 연구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본교 교비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자체조달(학술연구비 수입금, 교육비, 교내외의 기부금, 출판 수입 등)도 재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 및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규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